

교양기초교육원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7.6.9.개정)

제2조(사업) 교육원은 루터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을 연구·개발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 (2017.6.9.개정)

1.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(2017.3.15.개정)
2. 핵심역량 기반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(2017.3.15.개정)
3. 핵심역량 기반 교양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·운영 (2017.3.15.개정)
4.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
5. 교양 교과목 편성 (2017.7.17.개정)
6. 편성에 따른 강사 선임 (2017.7.17.신설)
7. 교양교육과정의 성과진단 및 분석 (2017.12.22.신설)
8. 기타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(2017.7.17.신설)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,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연구위원과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. (2017.3.15.개정), (2017.6.9.개정)

②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 (2017.6.9.개정)

③ 연구위원 및 연구교수는 본교의 교원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원장이 추천하고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 (2017.3.15.신설), (2017.6.9.개정)

제4조(교양교육과정위원회)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 (2017.6.9.개정)

②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“교양교육과정위원회 규정”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.

③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교양기초교육원장, 교무처장, 교양교수, 전공교수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한다. 외부위원은 사회수요 및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, 재학생 등을 선정한다. 재학생은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총학생회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2018.2.2.신설), (2018.2.19.신설)

제5조(준용)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,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 (2018.2.19.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